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41
----------	-----

제출년월일 : 2024. .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령(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육훈련 중 또는 교육훈련을 마친 의무위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비 반납액 산정 기준을 규정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4. 8. 2. ~ 2024. 8.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평창군 공고 제2024-1129호, 행정담당관-4658(2024. 8. 25.)호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기획예산과-2089(2024. 8. 2.)호]
- 3)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 [기획예산과-2089(2024. 8. 2.)호]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가족복지과-4461(2024. 8. 1.)호]
- 5) 법제심사 : 적정 [기획예산과-4070(2024. 9. 6.)호]
- 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원안의결[기획예산과-4934(2024. 9. 26.)호]

평창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평창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영 별표2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제35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 11. 30.>

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
3.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
4.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35조 관련)

구분	기준	반납액
1. 제35조제1호·제3호 해당자	소요경비	전액
2. 제35조제2호 해당자	소요경비 × $\frac{1}{2}$	
3. 제35조제4호 해당자	소요경비 ×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비고

- 가. 의무복무월수 및 근무월수의 계산에서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나. 국외훈련을 위하여 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반납고지서 발급일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다. 제2호 해당자가 다시 제3호에 해당한 경우 그 추가반납액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월수} - \text{근무월수}}{\text{의무복무월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행정담당관 권 혁 수
연락처	(033) 330 - 2210